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문장길 의원
- 나. 의안번호: 제1420호
- 다. 발의일자: 2020. 4. 3.
- 라. 회부일자: 2020. 4. 8.

2. 제 안 사 유

- 서울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자치구의 재정 악화로 거리 쓰레기통을 대폭 줄여 휴지통 증설에 대한 민원의 증가와 거리 미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악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2012년부터 「가로휴지통 증설·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급형 디자인 개발과 민간 참여방식을 도입하였음.
- 하지만 민간 참여방식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2016년부터는 자치구별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현황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자치구별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지원 및 조정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거리 쓰레기통 등 공중 폐기물 수집 설비의 설치비용 지원 규정 신설
(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서울시는 시장방침 제174호('13. 6. 14.) 「가로휴지통 증설·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 폐기물종량제와 가로쓰레기통

- 폐기물종량제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이 제도는 폐기물 수수료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음
- 폐기물 종량제로 인해 거리 쓰레기통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2007년 한 조사¹⁾에 따르면 서울시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중 명동, 대학로, 종로 등에는 거리 쓰레기통이 1km당 하나 꼴로 조사되는 등 2000년대 초반에는 거리에서 쓰레기통이 사라져가는 추세였음
- 그러나 이로 인해 외국인들을 포함한 관광객들과 일반 시민들의 폐기물 무단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²⁾되었고, 이에 서울시는 시장 방침으로

1) 그 많던 쓰레기통은 다 어디로 갔을까(Story of Seoul, 2007.8.1.)
<http://www.storyofseou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7>

2) 쓰레기통 없앤 서초구 vs 100m 마다 설치한 강남구(중앙일보, 2016.2.17.)
<https://news.joins.com/article/19579894#none>

수립된 「가로휴지통 증설·관리계획」을 통해 가로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등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 2020년에는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21개 자치구에 거리 쓰레기통 838개의 설치비를 50:50의 비율로 지원할 예정임.

<2020년 서울시 거리 쓰레기통 설치 보조금 지원 기준>

- 각 자치구별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50:50)
 - 단, 재정자립도 35% 이상인 자치구는 상한액을 4.1백만원으로 조정
※ 2019년 재정자립도 35% 이상인 자치구 상한액: 4백만원
-

□ 검토 의견

-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 미관을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일부 공감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에 폐기물 종량제의 기본 원칙인 원인제공자(배출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임
-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불가피하게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